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총리 (인사혁신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공무수행과정에서 상당기간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고, 공무상 사고로 인한 부상이 명백한 경우에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생략하는 내용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법률 제18963호, 2022. 6. 10. 공포, 2023. 6. 11. 시행)에 따라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는 대상 질병의 종류를 규정하고,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의가 생략되는 요양급여의 결정 권한을 공무원연금공단으로 위탁하는 내용으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정하는 한편,

공무원연금공단이 수행할 수 있는 공무원 재해예방사업, 재활 및 직무복귀 지원 사업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공무상 재해 예방을 위한 공무원의 건강정보 처리 근거 규정을 신설하며, 공무상 재해 심의의 전문성과 수용성 제고를 위하여 공무원연금공단에 자문의사회의를 설치하고 조사 권한을 공무원연금공단으로 위탁하는 등 현행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공상추정제 도입 및 명백한 공무상 부상 심의 생략 법률 개정 후속

조치(안 제5조의 2 및 제14조제2항·제5항, 제28조제5항, 제29조제1항, 제84조제1항)

- 1)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어 공무원이 질병 등에 걸리는 경우에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는 대상 질병의 종류를 규정함.
- 2) 공무상 사고로 발생한 부상이 명백하여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의가 생략되는 경우에는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요양급여의 결정 등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탁함.

나. 공무원 재해예방 및 재활 등 지원 사업 활성화 기반 마련(안 제84조제2항 및 제86조제1항, 별표7)

- 1) 법률의 위임(제61조제3항)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재해예방사업과 재활 및 직무복귀 지원 사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 2) 공무원의 건강 실태조사 및 맞춤형 예방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공무원의 건강에 관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다. 공무상 재해 심의의 전문성 및 수용성 제고(안 제33조 제1항~제3항 및 제84조제1항)

- 1)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수행하는 공무상 요양기간 연장의 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공무원연금공단에 자문의사회의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 2) 공무원연금공단 직원이 모든 공무상 재해 신청 건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조사권한을 공무원연금공단
으로 위탁함.

라. 이민 및 국적상실 증빙서류 변경(안 제22조제1항)

- 외국 이민 또는 국적 상실의 사유로 일시금 지급하는 경우에 이민
또는 국적 상실을 충분히 증빙하기 위하여 증빙자료를 출국증명서
에서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로 변경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1. 20. ~ 3. 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공무상 재해 인정 특례 질병의 종류) 법 제4조의2에 따른 질병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골격계 질병
2. 심뇌혈관 질병
3. 직업성 암
4. 정신질환
5. 그 밖에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항

제14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84조제1호에 따라 공단이 결정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제5항 중 “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급여
2. 제84조제1호에 따라 결정을 위탁받은 요양급여

제22조제1항 중 “출국증명서, 출국예정증명서”를 “「해외이주법 시행

령」 제5조제2항에 따른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로 한다.

제28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84조제1호에 따라 공단이 요양급여에 대한 결정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공단이 직접 공무상 요양 승인 여부와 요양기간을 결정한 후 그 결정서를 신청인, 연금취급기관장 및 제85조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지급업무 등을 재위탁받은 기관에 보내야 한다.

제29조제1항 중 “제28조제4항”을 “제28조제4항 및 제5항”으로 한다.

제3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요양 자문위원”을 “자문위원”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공단은 법 제61조제1항제6호의 업무와 관련한 자문을 하기 위하여 공단에 자문의사회의를 둘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문위원의 자격과 위촉 절차, 자문의사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제8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1호를 제1호의2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1호 및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4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심의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요양급여에 대한 결정

4의2.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조사

②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재해예방사업, 재할 및 직무복귀 지원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해예방, 재할 및 직무복귀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법 제46조제2항제1호 및 제47조제2항제1호)
2. 공무원 재해에 관한 실태조사 및 재해예방, 재할 및 직무복귀에 관한 연구(법 제46조제2항제2호 및 법 제47조제2항제3호)
3. 재해예방을 위한 시설·장비의 안전 점검 및 컨설팅(법 제46조제2항제3호)
4. 재해예방을 위한 건강진단 및 상담(법 제46조제2항제4호)
5. 재해예방 관련 홍보 및 국내외 교류·협력(법 제46조제2항제5호)
6. 공무원 건강 유지·증진 시설 설치 및 운영(영 제57조제2호)
7. 재해예방, 재할 및 직무복귀 교육·조사·연구 등을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영 제57조제3호 및 영 제58조제4항제2호)
8. 조기 직무적응을 위한 직무연수, 재훈련 등 교육 지원(영 제58조제4항제3호)
9. 공무원 재해로 상실된 신체기능 보완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요양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영 제58조제4항제4호)

제86조제1항제14호를 제14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법 제46조에 따른 재해예방

별표 7 제19호를 제20호로 하고, 같은 표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 검진 자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 제14조, 제28조, 제29조 및 제84조제1호의 개정 규정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급여의 청구 및 결정 절차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 제28조, 제29조 및 제84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공무원 요양 승인이 신청되어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별표 7]

인사혁신처장 및 공단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제79조제2항 관련)

1.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와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전산정보자료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 지급에 관한 자료
4. 「국민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 및 「별정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국민,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및 별정우체국 직원에 관한 자료와 각 법에 따른 급여에 관한 자료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관한 자료
6.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에 따른 소득·과세에 관한 자료
7.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사업장 성립·적용·탈퇴·해지 및 가입자 자격의 취득(고용)·상실(고용종료) 등 부과·징수에 관한 자료와 급여에 관한 자료
8.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과 「보험업법」, 「선주상호보험조합법」에 따라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가입자 관리, 보험금 산출 및 지급에 관한 자료
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건설기계관리법」, 「한국해운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원양산업발전법」, 「민법」 및 「선원법 시행령」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는 자의 가입자 관리, 보험금·공제금의 산출 및 지급에 관한 자료
10.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보험금 지급에 관한 자료
1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에 관한 자료,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등록자료 및 출입국에 관한 자료
1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의 수용에 관한 자료

1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부동산등기법」 및 「건축법」 등에 따른 건물, 「선박법」 및 「어선법」에 따른 선박 및 어선, 「자동차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및 건설기계,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기 등의 등기·등록 및 공시가격에 관한 자료
14.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 관련 자료 및 「형사소송법」에 따른 상해 또는 사망과 관련된 사건·사고의 수사기록 및 소송 관련 자료, 「공탁법」에 따른 공탁 관련 자료
15. 「도로교통법」에 따른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 교통사고 조사사항에 관한 자료
16. 「의료법」에 따른 진단서, 진료기록부 등 진료에 관한 자료 및 진료비 산출에 관한 자료
17.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화장 등 장사에 관한 자료
18.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급활동에 관한 자료
19.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 검진 자료
20. 그 밖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요양기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및 별표 6에 따른 기관·법인·단체가 보유한 자료로서 공무원재해보상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사혁신처장 또는 공단이 인정하는 자료

신 · 구조문대비표

[illegible]

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후 사실관계 확인·조사 결과를 청구서류와 함께 인사혁신처장에게 보내야 한다. <단서 신설>

③·④ (생략)

⑤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청구된 급여가 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급여인 경우에는 각 급여의 요건을 심사한 후 그 급여액을 법 및 이 영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한다.

<신설>

⑥ (생략)

제22조(이민 및 국적 상실에 따른 연금청산 청구) ① 외국으로 이민을 가는 연금수급자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금인 급여 대신 일시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연금청산 청구서에 출국증명서, 출국예정증명서 등 이민을

-----.다만, 제 84조제1호에 따라 공단이 결정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④ (현행과 같음)

⑤ -----
---- 다음 각 호-----

-----.

1. 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급여

2. 제84조제1호에 따라 결정을 위탁받은 요양급여

⑥ (현행과 같음)

제22조(이민 및 국적 상실에 따른 연금청산 청구) ① -----

----- 「해외이주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28조(공무상 요양 승인) ① ~

④ (생략)

<신설>

제29조(공무상 요양기간의 연장)

① 공무원등이 제28조제4항에 따른 요양기간을 초과하여 요양하거나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실제요양기간 3년을 초과하여 요양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공무상 요양기간 연장승인 신청서에 진단서(요양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필요한 요양내용, 요양기간 연장 필요 여부 및 필요한 요양기간에 관한 의

를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
-----.

② (현행과 같음)

제28조(공무상 요양 승인)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84조제1호에 따라 공단이 요양급여에 대한 결정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공단이 직접 공무상 요양 승인 여부와 요양기간을 결정한 후 그 결정서를 신청인, 연금취급기관장 및 제85조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지급업무 등을 재위탁받은 기관에 보내야 한다.

제29조(공무상 요양기간의 연장)

① ----- 제28조제4항 및 제5항-----

사의 소견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33조(요양 등에 대한 자문) 공단은 요양급여(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로 한정한다), 재활급여 또는 간병급여 등과 관련한 자문을 하기 위하여 의료 전문가를 요양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신설>

<신설>

제84조(인사혁신처장의 업무 위탁) 법 제61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

② (현행과 같음)

제33조(요양 등에 대한 자문) ①

----- 자문위원
-----.

② 공단은 법 제61조제1항제6호의 업무와 관련한 자문을 하기 위하여 공단에 자문의사회의를 둘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문위원의 자격과 위촉 절차, 자문의사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제84조(인사혁신처장의 업무 위탁) ① -----

-----.

1.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심의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요양

1. (생략)

2. ~ 4. (생략)

<신설>

5. ~ 8. (생략)

<신설>

급여에 대한 결정

1의2. (현행 제1호와 같음)

2. ~ 4. (현행과 같음)

4의2.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조사

5. ~ 8. (현행과 같음)

②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인사
혁신처장이 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재해예방사업, 재할 및 직
무복귀 지원 사업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1. 재해예방, 재할 및 직무복귀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법 제46조제2항제1호 및 제4
7조제2항제1호)

2. 공무상 재해에 관한 실태조
사 및 재해예방, 재할 및 직무
복귀에 관한 연구(법 제46조
제2항제2호 및 법 제47조제2
항제3호)

3. 재해예방을 위한 시설·장비
의 안전 점검 및 컨설팅(법 제
46조제2항제3호)

4. 재해예방을 위한 건강진단
및 상담(법 제46조제2항제4
호)

	<u>5. 재해예방 관련 홍보 및 국내외 교류·협력(법 제46조제2항제5호)</u> <u>6. 공무원 건강 유지·증진 시설 설치 및 운영(영 제57조제2호)</u> <u>7. 재해예방, 재할 및 직무복귀 교육·조사·연구 등을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영 제57조제3호 및 영 제58조제4항제2호)</u> <u>8. 조기 직무적응을 위한 직무연수, 재훈련 등 교육 지원(영 제58조제4항제3호)</u> <u>9. 공무상 재해로 상실된 신체기능 보완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요양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영 제58조제4항제4호)</u>
제8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인사혁신처장, 연금취급기관장, 공단(법 제61조제6항 및 이 영 제85조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재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	제8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 ----- ----- ----- -----

다), 심의회 또는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 또는 이 영에 따라 받은 서류 및 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 13. (생략) <u><신설></u> <u>14.</u> (생략) 15. ~ 19. (생략) ② (생략)	----- ----- ----- ----- ----- ----- ----- ----- ----- ----- ----- ----- ----- ----- ----- 1. ~ 13. (현행과 같음) <u>14. 법 제46조에 따른 재해예방</u> <u>14의2.</u> (현행 제14호와 같음) 15. ~ 19.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담당관	
연 락 처	(044) 201 - 8135